

춘천지방법원 2023. 8. 17 선고 2023나3055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3. 7. 6.

판 결 선 고 2023. 8. 17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. 1. 17. 선고 2022가단633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/7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3. 12. 6. 접수 제692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C의 6남매 자녀 중 장남과 5녀이다.

나. C은 2013. 11. 7. 위암 말기 상태에서 통증완화 등을 위해 D의료원 호스피스내과에 입원하였고, 수액과 마약 성분의 듀로제식디 등 진통제를 투여받았다.

다. C은 2013. 12. 4.경까지 비교적 의식이 명료(alert)하였으나 같은 달 5. 기면상태(drowsy)에 빠졌고, 다음 날인 2013. 12. 6. 다시 의식수준이 명료한 상태로 돌아왔다가 다시 같은 달 9. 기면상태에 빠진 후 같은 달 11. 사망하였다.

라. 피고는 2013. 12. 5. C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은 후, 2013. 12. 6.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 중 C의 1/7 지분에 관하여 2013. 12. 5. 증여를 원인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, 을 제6호증의 각 기재,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주장의 요지

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.

1) C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위암으로 인한 암성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받아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었다.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이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.

2) 피고는 망인의 등기권리증, 인감도장, 주민등록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망인의 위임 없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,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.

나. 판단

1) 원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

가)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

귀속을 주장하고,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(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)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,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,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5다45452 판결 참조).

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·입증하여야 하고,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(대법원 1999. 2. 26. 선고 98다17831 판결, 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5다249352 판결 등 참조).

나)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인 원고의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지분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, 원고가 자신의 상속지분인 1/42지분( $= 1/7 \times 1/6$ )을 초과하여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원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 2) 원고의 상속지분 범위 내의 부분에 관하여

가)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[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09다53093(본소), 2009다53109(반소) 판결 등 참조]. 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).

나)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,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이 의식불명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망인의 위임 없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을 제4호증의 1,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망인이 2013. 11.경 위암 말기의 상태에서 통증완화를 위해 D의료원에 입원한 후 서울에 거주하던 피고가 주로 망인을 간병한 사실, 망인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2013. 6. 2. 망인의 생일을 기념하여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인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, 망인은 D의료원에 입원하던 중에도 수시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비록 이 사건 증여일자인 2013. 12. 5. 당시 망인이 기면상태여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, 망인은 2013. 6. 2. 가족모임 자리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였고, 그 이후에도 수시로 같은 의사를 밝혀왔으므로, 피고가 2013. 12. 5.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.

3)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### 3. 결 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조미연, 판사 이보라, 판사 고병용